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도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7. 29. 선고 2021도11288 판결)

피고인 회사는 A사로부터 연료운송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제작, 설치한 후 그 관리권을 A사에게 이관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연료운송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A로부터 요청받은 연료운송설비 관련 작업 중에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을 A사에게 이관하였기에 연료운송설비가 설치된 곳을 '피고인 회사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책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 회사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